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643

발의연월일: 2022. 5. 17.

발 의 자:이해식 · 이형석 · 김영배

한정애 · 김성환 · 김영호

우원식 • 박재호 • 전혜숙

천준호 · 임호선 · 한병도

서영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은 세 부담 상한비율에 대해 주택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주택의 경우 100분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100분의 110,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100분의 130으로 각각 정하고 있음.

또한, 유상거래 등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점증적으로 적용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최근,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의 취득단계, 보유단계 및 거래단계에서 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되었음.

이 같은 부동산 세금증가에 따른 부담 적정화를 위해 2021년도에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금액기준을 종전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과세기준금액을 종전 실지거래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조정하였음.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부동산 세금 적정화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취득세 및 주택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세 부담 상한의 비율을 100분의 105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100분의 110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이어 주택 취득가액별로 1~3% 세율이 점증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주택 취득가액을 현행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변경하고 3%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가액을 현행 9억원 초과 주택에서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주택 취득세율 조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25.75%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소비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 비율 등을 각각 변경함(안 제11조제1항제8호 등).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12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 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해당주택의 $imes \frac{1}{3$ 억원 -1 $) imes \frac{1}{100}$

다.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6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만분의 2,57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1조제3항제1호 중 "253분의 50"을 "2,575분의 500"으로 하고, 제2호 중 "253분의 60"을 "2,575분의 600"으로 하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53분의 100"을 "2,575분의 1,000"으로 하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53분의 43"을 "2,575분의 430"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75분의 45에 해당하는 부

분은 법률 제0000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제122조제1호 중 "3억원"을 "6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을 "6억원 초과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소비세의 세액에 관한 특례)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69조제1항의 과세표준에 1만분의 2,4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7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2,575분의 500은 2,415분의 500으로,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 중 2,575분의 600은 2,415분의 600으로,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 중 2,575분의 600은 2,415분의 600으로,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 중 2,575분의 600은 2,415분의 600으로,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 중 2,575분의 600은 2,415분의 600으로,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

정 중 2,575분의 1,000은 2,415분의 1,000으로, 같은 항 제4호의 개정 규정 중 2,575분의 430은 2,415분의 270으로, 같은 항 제5호의 개정 규정 중 2,575분의 45는 2,415분의 45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 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 다.

- 1. ~ 7. (생략)
- 8. (생략)

가. (생략)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 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해당주택의 $imes rac{2}{3억원}$ - 3 $) <math> imes rac{1}{100}$

<u>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u> <u>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u> <u>0</u>

② ~ ④ (생 략)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생략)

개 정 안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

- 1. ~ 7. (현행과 같음)
- 8.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12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 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해당주택의 $imes \frac{1}{3억원}$ - 1) $imes \frac{1}{100}$

<u>다.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을</u> <u>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u> <u>0</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현 행과 같음)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의 과세표준에 1만분의 2,575를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다.

제71조(납입) ① ~ ② (생 략)

-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 다.
-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u>253분의 50</u>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u>253분의 60</u>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 제12118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따라 감소되는 취득세,지방교육세,지방교부세,지방교

의 과세표준에 1만분의 2,57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
<u>다.</u>
제71조(납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
<u>2,</u> 575분의 <u>500</u>
<u>.</u>
2
<u>2,575분의 600</u>

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 다.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u>253분의 100</u>에 해당 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 다. (생 략)

4.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43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 다. (생 략)

<신 설>

3.	
	<u>2,575분의 1,000</u>
	가. ~ 다. (현행과 같음)
4.	
	<u>2,575분의 430</u>
	<u>.</u>
	가. ~ 다. (현행과 같음)

5.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75분의 45에 해당 하는 부분은 법률 제0000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 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

④ (생략)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7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 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 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 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 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 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 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 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 다. 다만, 주택[법인(「국세기 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 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소 유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 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 로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 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 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u>나</u> .
④ (현행과 같음)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
1
6억위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를 하는 금액

-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 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u>6</u> 억원 초과인
<u><</u> 삭 제>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
<u> 핵</u>			